

학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교무처처무시행세칙
계절학기운영규정
공학교육인증에관한시행규정
교직원운영규정
국내대학과학생교류및
학점인정에관한규정
복수전공시행규정
융합전공시행규정
외국어인증에관한시행규정
이중전공시행규정
재입학시행규정
전과시행규정
제2전공시행규정
조기졸업제운영규정
졸업논문및졸업종합시험시행규정
졸업사정규정
졸업인증제시행규정
학과를구분하지않는모집단위
의학과(전공)배정에관한규정
학위수여규정
휴학중취득학점인정에관한규정
5년제학·석사연계과정시행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 1 장 목적과 편제

제 1 조 (목적)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진리·평화·창조의 교육이념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공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성인 외국어를 토대로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교수·연구함으로써 문화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적 탐구인·국제적 한국인·독창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9.4)

제 2 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인문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개정2006.11.20, 2007.11.13, 2008.10.17, 2009.1.20, 2012.9.29, 2013.1.6, 2013.5.23, 2014.7.28, 2015.2.4, 2015.4.15, 2016.3.4)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개정2012.3.27, 2012.9.29, 2013.1.6, 2013.5.23, 2013.6.19, 2014.6.10, 2014.7.28, 2015.2.4, 2015.3.16, 2015.4.15, 2015.8.31, 2016.3.4)

③ 삭 제

④ 학생 선발 시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1996.2.27, 개정2011.5.19, 2013.5.23)

⑤ 각 대학원의 학과 편성과 모집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대학원 및 학위

제 3 조 (대학원 학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인문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통괄하는 대학원 학칙을 둔다.(신설2009.9.4)

제 3 조의 2 (학위) 각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9.4)

제 3 조의 3 (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3.16)

제 3 장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기관

제 4 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개정2005.12.23, 2007.11.13, 2008.06.10, 2009.12.28, 2012.9.29, 2012.12.20, 2014.2.7, 2014.11.18, 2015.2.4, 2015.10.23)

1. 부속기관 :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GlobeDorm

2. 부속연구기관

㉞ 외국어문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㉟ 국제지역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㊱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㊲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신설2015.2.4, 개정2015.4.30)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개정2015.10.23)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도서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2016.3.4)

제 4 조의 2 (연구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연구 및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이하 “연구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04.6.11 개정2007.11.13)

② 연구산학협력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2004.6.11 개정2007.11.13)

③ 연구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신설2004.6.11 개정2007.11.13)

- 제4조의 3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신설2004.9.7)
-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은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04.9.7)
- ③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의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을 줄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은 장학금지급규정범위 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2004.9.7)
- ④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기업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2004.9.7)

제 4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5 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② 재학 중 학점 초과 취득, 계절학기 등을 통하여 4학년 소정의 졸업 소요학점을 6-7학기에 조기 취득하고 평점평균 4.00(A⁺)이상의 우수한 학업성적을 나타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③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05.5.10)
- 제 6 조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개정1997.1.22)
-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7 조 (학년 및 학기) ①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다만, 매 학기의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 또는 후에 시작할 수 있다.(개정2012.3.27)
- ③ 필요에 따라 계절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계절제 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까지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8 조 (수업일수) ① 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9.9.4)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9.9.4)

제 9 조 (휴업일) ① 본 대학교의 정기 휴업은 다음과 같다.(개정2009.9.4)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일요일과 국경공휴일

4. 개교기념일(4월 20일)

②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2009.9.4)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6 장 입 학

제 1 절 시 기

제10조 (입학시기) ①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과 편입학은 매 학기초부터 3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제 2 절 자 격

제11조 (자격) 본 대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1993.6.23)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2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2, 3학년에 매학기 초 해당 학과·학년의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의 전 학년 수료자(2학기 편입학자는 1학기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그러나 제4학년도의 편입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학사편입학)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본 대학교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선발인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1997.1.22, 2014.11.18)

제14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1999.1.11)

② 재입학의 허가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1997.1.22)

제 3 절 절 차

제15조 (입학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고사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
2. 과거의 성적증명서
3. 출신학교장 추천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편입학의 지원을 하는 자는 제1항 3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입학하는 자는 제1항 1호 내지 3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미 본 대학교에 제출된 서류 또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16 조 (입학사정) ① 제15조의 지원자를 사정함에 있어서 본고사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를 병행하며, 사범대학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교직적성과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1993.3.31)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밖에 따로 편입학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1993. 3.31)

제16조의 2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성) ①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신설1993.3.31)

②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1993.3.31)

제16조의 3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신설2015.3.16)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3.16)

제17조 삭 제

제18조 삭 제 (1997.1.22)

제19조 (입학의 허가)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08.10.17)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삭 제 (2008.10.17)

제 7 장 전 과

제21조 (전과) ① 전과는 동일 캠퍼스 내에서 제2학년 진급 시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1997.1.22)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997.1.22)

제 8 장 휴학, 제적, 퇴학

제 1 절 휴 학

제22조 (일반휴학) ①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개정2016.3.4)

② 일반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6.3.4)

제23조 (휴학기간) 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6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학년 편입학자는 그 기간을 2년(4회)까지로 한다.(개정2006.4.5, 2012.8.28)

제24조 (입대휴학) 병역(지원입대자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의 2 (모성보호휴학)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7.28)

② 모성보호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14.7.28)

제25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로써 복학한다. 복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학기에 등록을 끝낸 자로서 휴학의 사유가 끝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그 학기 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 2 절 제적 및 퇴학

제26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한다.(개정1997.1.22, 2014.12.20)

1. 일반제적

가. 휴학기간 경과 후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나.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다. 대학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라.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성취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사제적

가. 학업성적 불량 제적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받은 자

나. 재학년한 초과자

다. 제적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27조 삭 제 (1997.1.22)

제28조 (자원퇴학)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 1 절 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 등

제29조 (전공) ① 본 대학교는 각 학과의 전공 이외에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를 둔다.(개정2006.10.18, 2016.3.4)

② 이중전공, 부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10.18, 2016.3.4)

제29조의 2 (학점)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신설2005.5.10)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7학기에 학부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신설2005.5.10)

③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05.5.10)

제 2 절 교과과정

제30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일반교양, 전공, 부전공 및 자유선택 등의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공학계열 학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08.9.19)

제31조 (학점) ①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2009.9.4)

②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의 경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고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점과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9.9.4)

③ 원격교육 과목은 온라인 대화형 강의 혹은 자율학습 강의로 진행하며, 가상교육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공되는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등의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강의 및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1998.8.31)

제32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3조 (수강과 이수)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이수과목(원격교육 학습과목으로 공고된 과목포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외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끝내지 아니하면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일단 승인을 받은 과목은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개정1998.8.31)

제 3 절 시험 및 성적평가

- 제34조 (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칙 제7조 제3항에 의한 계절제수업의 경우에는 따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5조 (결석) 매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유고결석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1999.3.12)
- 제36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A°급 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1992. 4.24)
- 제37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 과제물, 출석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 사정하며, 원격교육 과목의 평가는 통신에 의한 시험 및 과제물의 평가와 출석에 의한 시험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1998.8.31)

등 급	평 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0

- ② 전항의 성적평가에 따라 D°급 이상을 급제,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다만, 일단 취득한 학점의 과목도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1994.7.9)
- ③ 학업성적 평점평균 1.75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1994.3.7, 2014.12.20)

제 4 절 교과과정의 이수 및 졸업

- 제38조 (학점인정) ① 제9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판정된 과목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개정1997.7.30)

② 학생이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1/4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해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1/2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2.3.7)

③ 삭 제 (2002.3.7)

④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성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학점인정시기와 취소)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사무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부터 20학점(통번역대학 22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6.10.18, 2009.9.4)

②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제3학년 제1학기부터 학년별 최대 이수학점을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2006.10.18, 2009.9.4)

제41조 (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4학점(통번역대학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125학점(통번역대학 141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2006.10.18, 2009.9.4)

②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별 이수학점 및 교과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졸업에 필요한 총성적 평점평균은 2.00이상 이어야 한다.(신설1996.2.27)

④ 교양은 인문학강좌 8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신설2016.3.4)

제42조 (학년별 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2006.10.18, 2009.9.4)

<u>수료학년</u>	<u>수 료 학 점</u>
제1학년	34학점이상
제2학년	70학점이상
제3학년	106학점이상(통번역대학 112학점)이상
제4학년	134학점이상(통번역대학 150학점)이상

② 삭 제 (1996.2.27)

제43조 (편입 및 재입학생 학점이수)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을 참작하고,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을 사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전항에 의한 학점사정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44조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① 3학년 진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학기의 직전 학기 또는 졸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에서는 졸

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1999.3.12)

② 졸업논문을 제출할 시기는 졸업학기의 직전학기 또는 졸업학기로 하고 논문 지도교수 배정은 제3학년 제2학기초 또는 졸업학기의 직전학기초에 공고한다. (개정1999.3.12)

③ 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수로 임명하여야 하며 교수 1인에 담당 학생수는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매수 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⑤ 각 학과에서 졸업논문 대신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범위는 전 교과목을 균형있게 과하여야 하되, 필요시에는 부전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학과 단위 이상 규모의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과에 있어서 졸업논문을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졸업논문 작성 또는 졸업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⑧ 전항에 추가하여 졸업 요건인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2004.3.25)

제45조 (졸업증서) ① 본 학칙에 의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이중전공, 부전공 및 제2전공, 복수전공의 이수에 관한 것은 학위증과 학적부에 기록한다.(개정2006.10.18)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46조 삭 제

제 10 장 학생활동

제 1 절 조직 및 규율

제47조 (학생회)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 ④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8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49조 삭 제
- 제50조 삭 제
- 제51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각 교수에게 학생지도업무를 분담시킨다.
- ② 지도교수는 대상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며,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고 개별 상담에 응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2조 삭 제
- 제53조 (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함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상 별

- 제54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 또는 특히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5조 (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2000.12.8)
1. 시험 부정행위를 한 때
 2.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를 한 때 또는 음주행위로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학사에 관한 문서의 위조, 변조를 한 때
 4. 교직원에게 패덕행위를 한 때
 5. 학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때
 6. 그 밖의 학칙위반을 한 때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는 해당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1993.5.6)
- ④ 삭 제
- ⑤ 삭 제 (1997.1.22)
- ⑥ 본 조에 의한 학생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직 제

제56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00.1.12)

제56조의 2 (교원의 임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신설2011.11.8)

제57조 (삭 제)

제58조 (삭 제)

제59조 (삭 제)

제 12 장 교 수 회

제60조 (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수로서 이를 구성한다.

② 삭 제

③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1조 (기능)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1998.8.31)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발의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건의

3. 각종시험에 관한 건의

4.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 및 단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2조 (개회) 전체교수회 및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63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4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각 대학장, 도서관장과 따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로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5조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입학, 졸업, 진급방침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졸업생 취직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66조 (개회)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14 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의 징수

제67조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2011.5.19)

② 등록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11.5.19)

제68조 (납입의무) 학생은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1993.5.6, 2011.5.19)

제69조 (납입공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한다.(개정1993.5.6, 2011.5.19)

제70조 <삭제 2011.5.19>

제71조 (인가비용징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등록금 납입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개정2011.5.19, 2014.2.7)

제72조 (등록금의 반환)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개정2011.5.19)

제73조 (등록금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또는 상이균경이나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1.5.19)

제 15 장 외국인 특별생 · 위탁생

제74조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자는, 실력고사를 과하여 외국인 특별생으로 하여 정원의외로 그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수학 위탁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으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2.7)

제75조 (이수증서수여) 외국인 특별생, 위탁생에게는 교과과정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76조 (편입) 외국인 특별생, 위탁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77조 (준용) 외국인 특별생, 위탁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6 장 교원강습회

제78조 (교원강습회) 본 대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위촉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외국어교사의 재교육을 위하여 교원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2.7)

제79조 (교원강습회 공고) 교원강습회 기간, 수강자, 과목 등은 그 개최시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2.7)

제 17 장 공개강좌

제80조 (공개강좌) 본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출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1998.8.31)

제 18 장 자체평가(신설 2009.12.28)

제81조 (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장 학칙의 개정

제82조 (학칙의 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1998.8.31)

제 20 장 보 칙

제83조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1.20)

부 칙

- (1) 본 학칙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197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에 의한다.
다만, 복학·복적 및 재입학으로 인하여 1977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은 본 학칙에 의한다.

부 칙 <1975. 9. 24>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5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975. 11. 26>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5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 5, 10, 40, 44조)

부 칙 <1976. 3. 18>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 40, 43, 44조)

부 칙 <1978. 6. 12>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8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 4, 8, 40조)

부 칙 <1979. 8. 9>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9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 제22조 2항)

부 칙 <1979. 12. 12>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 39, 41, 60조)

부 칙 <1980. 2. 15>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0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4조 제1항 제4호와 5호, 2항 및 3항)

부 칙 <1980. 8. 13>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0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4조 3항)

부 칙 <1981. 6. 10>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1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졸업정원제 운영에 관한 조항과 학칙 제44조 제1항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80학년도 이전의 신입생은 구 학칙에 준한다.)

부 칙 <1984. 2. 28>

-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제 제11292호 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4조 및 제 5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984. 3. 1>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조에 의한 재학연한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7. 3>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4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부설기관)

부 칙 <1984. 9. 4>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4년 9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제2항 삭제)

부 칙 <1986. 2. 11>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6년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부속 및 부설기관, 제10장 학생활동)

부 칙 <1986. 4. 30>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6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부 칙 <1987. 3. 1>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042호, 1986. 12. 31) 부칙 제 2항에 의거 학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 정원은 별표 <24895>에 따른다.

부 칙 <1987. 9. 1>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제2조 제2항, 제14조, 제18조, 제27조 및 제5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 허가기간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1989. 8. 16>

-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 (2)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경과조치) 1981학년도 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 및 사범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 하여는 제2조, 제13조, 제18조, 제45조, 제46조 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0. 6. 11>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10>

-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1>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24>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9>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31>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요청하는 경우 제14조, 제26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기간은 1993학년도 제1학기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99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은 1993년 4월 30일까지 허가한다.

부 칙 <1993. 5. 6>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23>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0>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8>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7>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13>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9>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0. 13>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9>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7>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 이 변경학칙 <별표 1-4>는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9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이 학칙변경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각 학과의 학생들은 개칭된 경상대학 각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3. 이 학칙변경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미생물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4. 이 학칙변경에 따라 자연과학대학의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는 신설된 정보산업공과대학의 전자·제어공학부로,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로, 산업공학과는 신설된 정보산업공과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부 칙 <1996. 7. 1>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22>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 1. 22부터 시행하되,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55조 제5항의 규정은 1996.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7. 30>

- (1)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997. 8. 29>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8>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31>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2>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2>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8>

- (1)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3. 7>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졸업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법과대학의 경우, 제41조 제1항의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 입학생까지의 졸업(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2003. 7. 25>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편제)는 200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3. 25>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4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8항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6. 11>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7>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29>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5. 1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8. 8>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23>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4. 5>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18>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이중전공제를 선택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06. 11. 20>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1. 13>

- (1)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6. 1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9>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7>

-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변경학칙 입학정원표(별표 1-4)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변경에 따라 동양어대학 중국어과는 중국어대학으로, 동양어대학 일본어과는 일본어대학으로, 상경대학 경영학부는 글로벌경영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부 칙 <2009. 1. 2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4>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변경학칙 입학정원표(별표1-4)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대학의 철학전공, 사학전공, 언어인지과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의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전자물리학전공, 환경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생명화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디지털정보공학전공, 산업정보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디지털정보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학부, 경상계열, 수학·정보통계학부, 환경·생명공학·화학부,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학과로 배정한다.

부 칙 <2009. 12. 28>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9>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8>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7>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8>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학년도 제2학기 편입 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9. 29>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후속조치(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1927, 2012.5.8)에 따라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 유지한다.
2. 이 변경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2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6>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5. 23>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14. 3. 1부터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를 Language & Diplomacy학부로 배속시키며, 자유전공학부의 교육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 칙 <2013. 6. 19>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7. 28>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18>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이전 부여한 학사경고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 2. 4>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6>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4. 15>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별표1-5)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4. 30>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31>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공명칭 변경은 2015. 9. 1 기준 재적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5.10.23>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4>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 제41조(졸업학점) 제4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별표 1-1>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3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영어학과		70
	영문학과		70
	영어통번역학과		60
	계		200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5
	독일어과		85
	노어과		45
	스페인어과		85
	이탈리아어과		3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30
	네덜란드어과		30
	스칸디나비아어과		30
	계		420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아랍어과		45
	태국어과		30
	베트남어과		30
	인도어과		3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30
	이란어과		30
	몽골어과		20
	계		245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중국어학전공 중국문학전공 중국지역학전공	110
	계		110
일본어대학	일본학부	일본어학전공 일본문학전공 일본지역학전공	85
	계		85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43
	행정학과		4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전공	56
	계		202
법과대학	법학과		-
	계		-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3학년도 입학정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52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72
	계		124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40
	계		140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0
	프랑스어교육과		25
	독일어교육과		25
	한국어교육과		30
	계		120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총 계			1,676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3학년도 입학정원
인문대학 (위치:용인)	철학과		38
	사학과		38
	언어인지과학과		38
	계		114
통번역대학 (위치:용인)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심화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문화통번역전공 영어학전공	100
	독일어통번역학과		5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중국어통번역학과		50
	일본어통번역학과		40
	아랍어통번역학과		45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0
	태국어통번역학과		30
	계		435
동유럽학대학 (위치:용인)	폴란드어과		34
	루마니아어과		34
	체코·슬로바키아어과		34
	헝가리어과		34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34
	우크라이니아어과		20
	계		230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3학년도 입학정원
국제지역대학 (위치:용인)	프랑스학과		63
	브라질학과		40
	그리스 · 불가리아학과		30
	인도학과		26
	중앙아시아학과		30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 전공 서아프리카어 전공 남아프리카어 전공	50
	러시아학과		40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30
	계		309
경상대학 (위치:용인)	국제경영학과		43
	경제학과		42
	경영정보학과		34
	계		119
자연과학대학 (위치:용인)	수학과		38
	통계학과		38
	전자물리학과		38
	환경학과		48
	생명공학과		48
	화학과		48
	계		258
공과대학 (위치:용인)	컴퓨터공학과		57
	정보통신공학과		48
	전자공학과		48
	디지털정보공학과		48
	산업경영공학과		48
	계		249
(위치:용인)	인문계자유전공학부		33
	이공계자유전공학부		15
	총 계		1,722

<별표 1-2>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4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영어학부	영어전공	200
	계		200
서양어대학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420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계	계	420	
동양어대학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245
		아랍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몽골어과		
계	계	245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58
	중국의교통상학부	중국의교통상전공	52
	계		110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50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35
	계		8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100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계		160	
법과대학	법학과		-
	계		-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52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72
	계		124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40
	계		140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4학년도 입학정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0
	프랑스어교육과		25
	독일어교육과		25
	한국어교육과		30
	계		120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 전공	42
총 계			1,676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4학년도 입학정원
인문대학 (위치:용인)	인문대학	철학과	114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계		114
통번역대학 (위치:용인)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영어학전공	100
	독일어통번역학과		5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중국어통번역학과		50
	일본어통번역학과		40
	아랍어통번역학과		45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30
	태국어통번역학과		30
	계		435
동유럽학대학 (위치:용인)	폴란드어과		34
	루마니아어과		34
	체코·슬로바키아어과		34
	헝가리어과		34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34
	우크라이나어과		20
	계		190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4학년도 입학정원
국제지역대학 (위치:용인)	프랑스학과		63
	브라질학과		40
	그리스·불가리아학과		30
	인도학과		26
	중앙아시아학과		30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서아프리카어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50
	러시아학과		40
	국제스포츠투레저학부	국제스포츠투레저전공	30
	한국학과		20
	계		329
경상대학 (위치:용인)	국제금융학부	국제금융전공	92
	경영정보학과		34
	계		126
자연과학대학 (위치:용인)	수학과		38
	통계학과		38
	전자물리학과		38
	환경학과		48
	생명공학과		48
	화학학과		48
	계		258
공과대학 (위치:용인)	컴퓨터공학과		57
	정보통신공학과		48
	전자공학과		48
	디지털정보공학과		48
	산업경영공학과		48
	계		249
	총 계		1,701

<별표 1-3>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5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영어학과		69
	영미문학·문화학과		69
	EICC학과		59
	계		197
서양어대학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420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계	계	420	
동양어대학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245
		아랍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몽골어과		
계	계	245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56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전공	52
	계		108
일본어대학	일본어언어문화학부	일본어언어문화전공	48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35
	계		83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100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계		160
법과대학	법학과		-
	계		-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52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72
	계		124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5학년도 입학정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계		138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0
	프랑스어교육과		25
	독일어교육과		25
	한국어교육과		30
	계		120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 전공	35
	Language & Trade 학부	Language & Trade 전공	16
	총 계		1,676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5학년도 입학정원
인문대학 (위치:용인)	인문대학	철학과	114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계		114
통번역대학 (위치:용인)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 영어학전공	100
		독일어통번역학과	5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중국어통번역학과	50
		일본어통번역학과	40
		아랍어통번역학과	45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30
		태국어통번역학과	30
		계	435
동유럽학대학 (위치:용인)		폴란드어과	34
		루마니아어과	34
		체코·슬로바키아어과	34
		헝가리어과	34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34
		우크라이나어과	20
		계	190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5학년도 입학정원
국제지역대학 (위치:용인)	프랑스학과		63
	브라질학과		40
	그리스·불가리아학과		30
	인도학과		26
	중앙아시아학과		30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서아프리카어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50
	러시아학과		40
	국제스포츠투레저학부	국제스포츠투레저전공	30
	한국학과		20
	계		329
경상대학 (위치:용인)	국제금융학부	국제금융전공	92
	경영정보학과		34
	계		126
자연과학대학 (위치:용인)	수학과		38
	통계학과		38
	전자물리학과		38
	환경학과		48
	생명공학과		48
	화학과		48
	계		258
공과대학 (위치:용인)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105
	정보통신공학과		48
	전자공학과		48
	산업경영공학과		48
	계		249
	총 계		1,701

<별표 1-4>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6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영어학과		69
	영미문학·문화학과		69
	EICC학과		59
	계		197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FATI전공 프랑스·EU전공	70
	독일어과		85
	노어과		45
	스페인어과		85
	이탈리아어과		30
	포르투갈어과		30
	네덜란드어과		30
	스칸디나비아어과		30
계		405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아랍어과		45
	태국어과		30
	베트남어과		30
	인도어과		3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30
	이란어과		30
	몽골어과		20
계		245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56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전공	52
	계		108
일본어대학	일본언어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언어문화전공	48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35
	계		8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50
	행정학과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계		160
법과대학	법학과		-
	계		-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6학년도 입학정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52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82
	계		134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계		138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0
	프랑스어교육과		25
	독일어교육과		25
	한국어교육과		30
	계		120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 전공	35
	Language & Trade 학부	Language & Trade 전공	21
	총 계		1,676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6학년도 입학정원
인문대학 (위치:용인)	인문과학계열	철학과	102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16
	계		118
통번역대학 (위치:용인)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100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 영어학전공	
		독일어통번역학과	5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중국어통번역학과	50
		일본어통번역학과	40
	아랍어통번역학과	45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30	
	태국어통번역학과	30	
	계		435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6학년도 입학정원
동유럽학대학 (위치:용인)	폴란드어과		34
	루마니아어과		34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34
	헝가리어과		34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34
	우크라이나어과		20
	계		190
국제지역대학 (위치:용인)	프랑스학과		50
	브라질학과		40
	그리스 · 불가리아학과		30
	인도학과		26
	중앙아시아학과		30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서아프리카어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50
	러시아학과		40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30
	한국학과		20
계		316	
경상대학 (위치:용인)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Global Business & Technology전공	70
	국제금융학과		30
	계		100
자연과학대학 (위치:용인)	수학과		38
	통계학과		38
	전자물리학과		38
	환경학과		48
	생명공학과		48
	화학과		48
	계		258
(위치:용인)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35
공과대학 (위치:용인)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105
	정보통신공학과		48
	전자공학과		48
	산업경영공학과		48
	계		249
총 계			1,701

<별표 1-5>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7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영어학과		69
	영미문학·문화학과		69
	EICC학과		59
	계		197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FATI전공 프랑스·EU전공	70
	독일어과		85
	노어과		45
	스페인어과		85
	이탈리아어과		30
	포르투갈어과		30
	네덜란드어과		30
	스칸디나비아어과		30
계		405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아랍어과		45
	태국어과		30
	베트남어과		30
	인도어과		3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30
	이란어과		30
	몽골어과		20
계		245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56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전공	52
	계		108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48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35
	계		8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50
	행정학과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계		160
법과대학	법학과		-
	계		-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7학년도 입학정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52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82
	계		134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계		138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0
	프랑스어교육과		25
	독일어교육과		25
	한국어교육과		30
	계		120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 전공	35
	Language & Trade 학부	Language & Trade 전공	21
총 계			1,676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7학년도 입학정원
인문대학 (위치:용인)	인문과학계열	철학과	102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16
계			118
통번역대학 (위치:용인)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100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 영어학전공	
	독일어통번역학과		5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6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중국어통번역학과		50
	일본어통번역학과		40
아랍어통번역학과		45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30	
태국어통번역학과		30	
계			435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 · 전공	2017학년도 입학정원
동유럽학대학 (위치:용인)	폴란드어과		34
	루마니아어과		34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34
	헝가리어과		34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34
	우크라이나어과		20
	계		190
국제지역대학 (위치:용인)	프랑스학과		50
	브라질학과		40
	그리스 · 불가리아학과		30
	인도학과		26
	중앙아시아학과		30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서아프리카어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50
	러시아학과		40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30
	한국학과		20
계		316	
경상대학 (위치:용인)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Global Business & Technology전공	70
	국제금융학과		30
	계		100
자연과학대학 (위치:용인)	수학과		38
	통계학과		38
	전자물리학과		38
	환경학과		48
	생명공학과		48
	화학과		48
	계		258
(위치:용인)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35
공과대학 (위치:용인)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105
	정보통신공학과		48
	전자공학과		48
	산업경영공학과		48
	계		249
총 계			1,701

<별 표 2>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번호	명칭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소재지
1	i-외대	교육서비스업	영어학부, 외국어학과, 교양과정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번지

<서 식 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학위명: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_____				

교무처 처무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무처의 제반 사무를 기획 시행함에 있어 그 관리체제를 조직화하고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며 처무 부담을 전문화하여 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전체교수회의 결의가 없는 한 교무처 전반 사무에 적용한다.
- 제 3 조 (사무관장) 교무처의 사무는 우리 대학 업무분장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개정2008.3.1)
- 제 4 조 (처무체제) 교무처장은 전조의 사무를 각 담당자 책임 하에 집무토록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교무처장은 긴급 또는 비상적 사무라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배치하여 집무토록 할 수 있다.
- 제 5 조 (처무의 기획) 처장은 교무처의 사무를 기획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전체교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 제 6 조 (실시사항 보고) 처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대신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에 보고한다.
- 제 7 조 (공문서 등 처리) ① 공문서의 정의 : 공문서라 함은 교무처에서 사용하는 제반문서, 도면 및 기타 교무처 행정상 사용되는 제반 문서를 말한다.
- ② 처리책임 및 절차 : 1. 제반 공문서의 처리는 담당자의 기안으로부터 팀장 경우 처장 또는 부총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후 종결, 보관 처리함으로써 완결하되 그간의 관리책임은 각 담당자가 진다.
2. 공문서의 처리절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공문서처리규정에 의하거나 정부 공문서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 ③ 문서분류 : 공문서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1. 갑류 : 학적부, 학업성적표, 교수회의록 및 총장 결재를 필요로 하는 문서
 2. 을류 : 처장전결 문서
 3. 병류 : 재학생 성적보고 관계서류
 4. 정류 : 제증명서 부분, 시험답안지 및 출석부 등으로 한다.
- ④ 보관기한 : 문서보관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갑류 : 영구
 2. 을류 : 10년

3. 병류 : 3년

4. 정류 : 1년

상기 기한이 지난 문서는 문서인계부에 기재하여 행정지원처에 인계한다.

⑤ 비상반출표시 : 갑류, 을류 문서 보관장에는 비상시 피난에 대비하여 붉은 글씨로 「비상반출」이라 표시한다.

제 8 조 (공고문 게시절차) 게재된 사항 중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2부 작성하여 사본은 게시하고 원본은 보관한다.

제 9 조 (학생질의 문서 처리) 학생이 출원하는 문서의 처리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담당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팀장 경유 처장의 결재로써 학생에게 회보한다.

2. 전항의 내용을 매월별로 통계를 작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수차 반복될 경우에는 외대학보 또는 공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학생에게 주지시킨다.

3. 질의서의 부분은 보관하여 사무처리에 참조한다.

제10조 (제반 사무체계) 교무처의 사무체계는 처장의 명을 받아 팀장, 담당자의 순으로 하고 팀장 부재 시에는 담당이 대리한다.

제11조 (제반 사무처리 기간) ① 모든 사무의 일반적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규에 의한 것 : 예규에 정한 기간

2. 통칙에 의한 것 : 통칙에 정한 기간

3. 출원서류 : ㉠ 국문증명서-즉시 발급

㉡ 외국인 증명서-48시간 이내

㉢ 기타-3일 이내

② 전항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원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팀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수실의 관리) 본 대학교에 출강하는 교수 및 강사의 강의준비, 출석부관리 등 강의진행을 위하여 교수실을 두고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제 2 장 각 칙

제 1 절 교무일반사무

[1] 입학에 관한 사항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학점인정 원칙

1. (학사편입학) 학사편입학자의 학점은 교양34학점, 자유선택36학점만을 인정한다.
2. (일반, 정원 외 편입학) 일반, 정원 외 편입학자의 학점은, 교양학점, 자유선택학점 또는 전공학점을 각각 인정하되, 총 인정학점 수는 편입학년에 해당하는 본교 수료 인정학점과 전적대학에서의 취득학점 중 적은 학점수를 인정한다.

② 학점인정 절차(일반, 정원 외 편입학)

1. 편입학생의 전공학점 인정은 전적대학 성적표 등을 참고로 해당 학과장과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2. 교양학점, 자유선택학점은 교무처장이 심사하여 인정하되, 영역별 학점수로만 인정하며, 개별과목의 이수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2] 교과과정 및 시간표의 작성

제24조 (교과과정) 본 대학교 교과과정은 학칙 제30조에 설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25조 (교과과정의 변경) 교과과정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 (강의시간표의 작성) 강의시간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① 작성 원칙

1. 교과과정 중 해당 학기 개설 교과목을 결정한 후 각 학과, 학년 및 각 영역별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작성한다.
2. 본 대학교 강의시간은 50분간을 1교시로 하며 토요일은 제외하고 1일 9교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의 학습상 제 조건을 우선하여 특정일에 편중됨이 없도록 작성한다.
4. 연속강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체육, 실험·실습 등의 교과목 및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강의시간표는 전 각 호를 참조하여 수강상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하되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은 출강편의를 고려하여 전임교원의 시간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6. 각 영역별 수강자의 단위는 따로 정한다.

② 작성과정

1. 각 학과장 및 미네르바 교양대학장으로부터 다음 학기에 개설될 전공, 교양, 부전공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출강요일, 교시가 기재된 교과과정표를 받는다.(개정2015.6.29)
2. 작성원칙에 따라 교과과정표를 검토하여 강의실을 배정하며, 강의시간 조정 및 강의실 배정 시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과목의 순위>

<담당자의 순위>

- | | |
|--------|-------------|
| ㉠ 교양 | ㉠ 시간강사의 과목 |
| ㉡ 전공필수 | ㉡ 전임교수의 교양 |
| ㉢ 전공선택 | ㉢ 전임교수의 전공 |
| ㉣ 부전공 | ㉣ 전임교수의 부전공 |

3. 초안작성 : 전항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의 희망도 불구하고 요일과 교시를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시는 그 사유를 통고한다.

4. 시간표 결정 : 전항의 절차를 마친 강의시간표 초안은 처장 경우 총장결재로 결정한다. 결정된 시간표는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고 각 담당교수에게 통고한다.

③ 시간표의 변경

1. 결정 발표된 시간표는 총장의 결재 없이 변경할 수 없다.

[3] 수강신청

제27조 (수강신청 및 취소) ① 모든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 평점을 0.00으로 처리한다.

② 수강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매 학기 작성되는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 지침에 의한다. 다만, 지침의 변경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후 12학점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다만, 4학년 학생은 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개정2008.3.1)

제28조 (수강자 수 조사) ① 수강신청 후 출석부에 의거 수강인원을 조사한다.

② 이 조사는 강의진행(강의실 배치의 변경 등) 또는 교재 작성 및 각종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9조 (수강의 원칙 및 범위) ① 강의시간표상 시간이 중복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② 동일 과목을 이종으로 수강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이종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후에 취득한 과목을 삭제한다.

③ 전공교류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을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이나 부전공 과목

에서 수강할 수 있다.(개정2008.3.1)

- ④ 각 과목 수강에 있어 속강 과목은 1년 속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1개 학기를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해당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교과영역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수강신청지침에 따로 정한다.. 단, 취득학점 미달로 수업연한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등록횟수를 기준으로 8학기에 최대 2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30조 <삭 제>

제31조 <삭 제>

제32조 <삭 제>

제33조 <삭 제>

제34조 <삭 제>

제35조 (편입학생의 수강)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이 종결된 편입학생은 본 세칙 제27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입학생의 수강)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이 종결된 재입학생은 본 세칙 제27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37조 (편입학점 사정 특별조치) 편입학점 사정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아 특별 조치할 수 있다.

[4] 강의 진행

제38조 (휴강) 학칙 제9조의 휴업일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지시한 날은 휴강한다. 임시휴강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통지한다.

제39조 (강의시간) 강의시간의 시종 시각은 다음과 같다.(개정2010.3.1, 2015.5.19)

서울캠퍼스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09:00~09:50	6	14:00~14:50
2	10:00~10:50	7	15:00~15:50
3	11:00~11:50	8	16:00~16:50
4	12:00~12:50	9	17:00~17:50
5	13:00~13:50	10	18:00~18:50
글로벌캠퍼스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09:30~10:20	6	14:30~15:20
2	10:30~11:20	7	15:30~16:20
3	11:30~12:20	8	16:30~17:20
4	12:30~13:20	9	17:30~18:20
5	13:30~14:20	10	18:30~19:20

제40조 <삭 제>

제41조 (휴강 및 결강처리) 담당교수의 통보에 의하거나 해당 교시 시작 후 15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과목은 휴강 또는 결강으로 처리하고 공고한다.

제42조 (보강) 전조의 휴강 및 결강을 한 담당교수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제44조 (초과시수의 처리) 초과시수의 처리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출강의 인정) 공휴일, 임시휴일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이를 출강시수에 산입한다.

제46조 (강사료 계산) 초강료 및 시간강사료는 매월 25일 전 토요일을 기준으로 월 통계를 산출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시험 관리

제47조 (시험의 종류) 매학기 실시하는 정기시험, 입시시험, 기타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험 : 매 학기 2회
2. 입시시험 : 필요에 따라 수시
3. 과 제 물 : 담당교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
4. 어학실력고사 : 매년 다만, 어학실력고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8조 (정기시험) 매학기 정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험기간 : 중간시험 1학기 - 4월중, 2학기 - 10월중
학기말시험 1학기 - 6월중, 2학기 - 12월중
2. 시험시간 : 시험시간은 50분간을 1교시로 한다.
3. 시간표 작성 :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그 학기에 개설된 전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과목, 교시, 수험실, 수험학과, 감독교수 등을 표시하여 작성 한다.
4. 수험생의 배치 : 각 강의실 수용인원의 2분의 1을 수험정원으로 하고 수험학과 학생수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반 배치한다.
5. 감독교수 배치 : 감독교수는 그 과목 담당교수와 교·강사로 하여 1개 수험실에 2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기간 중 감독교수의 감독시간은 강의시수에 산입한다.
6. 시험문제 출제 : 각 담당교수는 시험문제를 지정한 날까지 출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말 정기시험문제 제출 시 추가시험 실시용까지 2종을 제출하며, 제출된 시험문제의 보관은 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7. 시험문제 인쇄
 - ㉠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문제 제작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관리케 한다.
 - ㉡ 위촉된 시험문제 제작위원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시험문제 원본을 인수

하여 출판부에서 소요매수를 인쇄하고, 이를 각 수험실별, 과목별, 교시별로 분류하고 밀봉 후 날인하여 문제지와 원본을 학장에게 인계하고 소정의 대장을 비치하여 확인 날인한다.

8. 시험문제 인계 : 시험 당일분의 문제지는 매 교시 시작 직전에 감독교수에게 인계한다.

9. 수험생의 확인 대조 : 감독교수는 시험시간에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하여 확인 후 답안지의 감독교수 확인란에 날인한다.

10. 답안지 매수 확인 : 감독교수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수와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철 표지에 기재 후 날인한다.

11. 답안지 합철 : 감독교수로부터 인계 받은 답안지는 매수를 검사, 확인하여 답안지의 윗부분을 철하고 담당자의 날인과 동시에 성적보고서, 출석부와 함께 각 담당교수에게 인계한다.

12. 성적보고서의 제출 : 담당교수는 답안지 채점이 끝나면 소정 기일내에 답안지와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보고서의 제출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인터넷 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의 정정 또한 소정의 기간내에 인터넷상에서 처리한다. 다만, 다음 학기 개시 전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을 추가 정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3. 성적보고서의 성적평가율 : 성적평가 비율은 매학기 중간시험 50%, 학기말 성적 50%로 하여 합산 평균한 것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한다.

위의 경우 과락자가 수강자의 2할 이상일 때에는 60점 미만 50점 이상자는 60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과목에 따라 평소 성적과 과제물을 참조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답안지의 보관 : 시험답안지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15. 부정행위자의 답안지 처리 : 감독교수에게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시험본부에 인계하고 학생·인재개발처(대학창조일자리본부)에 통보한다.(개정2015.9.24)

16. 부정행위로 적발된 과목은 재수강하여야 하며, 나머지 과목은 중간고사 중 적발되었을 경우는 기말고사 성적의 80%를, 기말고사 중 적발되었을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80%를 성적인정원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성적 인정원서 미제출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9조 (성적인정원서 및 추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정기시험에 시간표의 중복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간에 결시한 경우 1회 결시 때는 성적인정원서, 2회 결시 때는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시험과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에 수험생으로부터 성적인정원서 또는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2. 1호에 의해 접수된 원서는 심사 후 허가여부를 판정한다.

3. 성적인정은 심사에 통과된 자의 1회의 성적에 한하여 처리한다.

4. 추가시험은 원서의 심사에 통과한 수험생의 시험과목을 집계하여 매 학기마

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5. 이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하고 그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6. 추가시험은 학기말시험 종료 직후에 실시하고 그 절차는 학기말시험 중에 공고한다.

7. 동일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모두 결시하고 추가시험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의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2회의 시험이 모두 준유고일 때는 추가시험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전에 입대휴학하는 경우 입대 전에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대복학 후 해당 학기에 추가시험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9. 추가시험의 절차를 마치고, 추가시험 실시 전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그 추가시험의 실시는 제대 후 따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사항은 그때마다 대학장의 지시에 의한다.

10. 1개 학기에 1회의 시험으로 학기성적을 평가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전에 입대 휴학하는 경우에는 입대 전에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제대 복학 후 해당 학기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11. 중간시험은 성적인정원서를 제출하고 학기말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학기말 성적으로 그 학기 성적을 대신한다.

12. 재학생 중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입대로 인하여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대신하여 처리한다. 입대의 표시는 학기말시험기간에 교학과에서 통보함에 의한다.

13. <삭제>

14.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1회 실시한 경우, 결시자는 위 각 호에 준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한다.

15. 1개 학기에 2회 정규시험을 실시할 경우, 1회의 결시자는 성적인정원서를 위 1, 2호에 준하여 제출하고 관정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결시자는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유고 결시자는 제외)

16. 추가시험 응시자는 과목당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 수험료는 원서 제출시에 학교 수입증지를 원서에 붙여야 한다. 이 수험료는 추가시험 실시 후 시험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0조 (성적인정 또는 추가시험의 성적평가기준) 성적인정 또는 추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자의 성적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인정원서 제출자의 평균성적은 유고로 판정된 경우는 100점 만점의 100%, 준유고로 판정된 경우는 80%로 한다.

2. 추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자의 평균성적은 A°급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6] 계절학기

제51조 (계절학기) 학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절학기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전체교수회의 개최준비 및 보고사항

제52조 (전체교수회의 개최준비) 전체교수회의는 학칙 제60조에 의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각 부서에서 심의안건을 수집하여 교수에게 배부한다. 다만, 주요안건은 개회 전에 배부할 수 있다.

제53조 (결정사항 회람) 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중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각 부서에 회람한다.

제54조 (결정사항 시행) 전체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장이 명하는 사항은 그 실시계획서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5조 (전체교수회의록 보관) 전체교수회의록은 감류로 보관한다.

[8] 관계 문서 수발 보관

제56조 <삭제>

[9] 기타 교무처 관계 사항 처리

제5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업무는 수시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교사자격에 관한 업무는 학사종합지원센터 사범대학지원파트에서 담당한다.

제 2 절 학 적 사 무

[1] 학적사항

제58조 (주소변경 통지업무) 재학생과 휴학생은 현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제59조 (학번배정) 학칙 제19조에 의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학번을 배정하고 학적부를 작성한다.

제60조 (등록금 감액) ① 9회 이상 등록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개정2010.3.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을 납부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3을 납부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2을 납부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

5. <삭 제>

② 복수전공자는 11회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제①항을 적용한다.

③ 재 입학자에 대하여도 제①항을 적용한다.

제61조 (미등록 제적)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자는 학칙 제26조 제1호의 '나'항에 의하여 제적 처리한다.

제62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삭 제>

제64조 <삭 제>

제65조 (일반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년간(학기별 휴학가능)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학기별 6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학년 편입학자는 그 기간을 2년(학기별 4회)까지로 한다.(개정2011.2.21, 2012.9.10)

③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2016.1.19)

1.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식적인 문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 함) : 매학기 대학력에 의한 중간시험일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증명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 복수전공의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⑤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1학기 재학 중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2016.1.19)

제66조 (입대휴학) ① 재학생으로서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입대휴

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대휴학 기간은 입대일부터 전역일(의무복무기간)까지로 한다.

③ 귀향조치된 자는 즉시(3일 이내)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모성보호휴학) ①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미 사용한 일반휴학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2014.7.31)

② 임신 및 출산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2014.7.31, 개정 2015.6.29)

③ 모성보호휴학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신설2014.7.31)

④ 모성보호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2016.1.19)

제67조 (복학) ① 일반휴학자가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결로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서식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대휴학자의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인 경우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단,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대휴학자가 입대휴학기간 만료로 복학하고자 할 경우 소정서식의 복학원서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본)또는 전역증사본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복학은 일반휴학기간 또는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에 하여야 하며, 등록 및 수강신청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복학이 허가된 자가 해당학기 소정기일 내에 전항의 제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복학을 취소하고 제적 처리한다.

⑥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전역이 예정된 자로서 부족한 수업일수만큼 휴가를 이용하여 미리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6.1.19)

제68조 (원적복학) ① 원적복학이라 함은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복학하는 당해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복학함을 뜻한다.

② 원적복학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㉞ 대학력에 의한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휴학한 자
 - ㉟ 대학력에 의한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입대 휴학한 자
- 제69조 (원서 제출기간) 휴학, 복학 및 재입학의 원서는 매학기 개강 이전의 소정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0조 (편입학자의 학력조회) 편입학이 확정된 자는 전적대학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여 기 제출한 증빙서류와 상이할 경우 편입학을 취소한다.

[2] 학사경고

- 제71조 (학사경고) 학칙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수업연한(4년)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4.12.20, 2016.1.19)
- 제72조 <삭 제>
- 제73조 (학사경고자의 공고) 학칙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명단을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제74조 (학사경고의 효력) 제적 전에 학칙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학사경고 횟수는 재입학 한 후에도 유효하다.

[3] 학업성적표 및 학적부

- 제75조 (학업성적표) 재학 중 취득한 성적은 학년별, 학기별로 누계한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76조 (학업성적 표기) ① 학업성적표의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기한다.(개정 2010.3.1)
 학업성적 표기 기호 : A⁺, A⁰, B⁺, B⁰, C⁺, C⁰, D⁺, D⁰, F.
- ② 학칙 제37조에 의한 총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총 취득 평점을 수강신청 총 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제77조 (학적부 기재사항) 학적부의 기재사항은 다음에 열거한 것을 주로 한다.
1. 인적사항 : 인적, 학력, 사진 및 보증인관계
 2. 학적사항 : 입학, 졸업,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및 보사항
 3. 상벌사항 : 성적장학금 수혜 및 상벌사항 단, 해당 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등재한다.
 4. 졸업시험 성적 또는 졸업논문 제목 및 성적
- 제78조 (학적사항의 정정) 학적부에 기록된 인적사항 중 호적부상의 기재사항과 상이

하여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서식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 (학업성적표와 학적부 전산자료 보관) 학업성적표와 학적부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입력한 자료는 전산 테이프르 2부를 제작하여 1부는 본 대학교에 보관하고 1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 보관용 전산 테이프의 보관 시기는 매학기 초 추가입력 및 정정 완료 후로 한다.

[4] 진급 및 학위 수여

제80조 (수료의 인정) 학칙 제42조에 의한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인정학점은 총 성적 평점평균 2.00 이상으로 다음과 같다.(개정2008.3.1, 2010.3.1)

수료 학년	수료학점			등록 조건
	134학점 졸업자	140학점 졸업자	150학점 졸업자	
1학년	34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2회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4회 이상
3학년	106학점 이상	108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6회 이상
4학년	134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8회 이상

단, 법과대학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수료 : 39학점이상,

2학년수료 : 75학점이상,

3학년수료 : 112학점이상,

4학년수료 : 150학점이상

제81조 (학사학위 수여) ①졸업사정회의를 거쳐 학위증을 수여한다.

② 학위 수여는 매 학년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조기졸업자에게는 학칙 제5조 제2항,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자에게는 학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0.3.1)

④ 9학기 이상자로서 학칙에 규정된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불합격, 졸업·외국어인증 미등록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생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의 신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연한(수료기간 포함 12학기)까지 수료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2010.9.30, 개정2015.6.29)

⑤ 수료생 중 재학연한이 경과되어도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만 발급한다.(개정2010.3.1, 2015.6.29)

[5] 증명서 발급

제82조 (증명서 발급) ①제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②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재학증명서
- ㉡ 재적증명서
- ㉢ 수료증명서
- ㉣ 졸업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 ㉥ 성적증명서
- ㉦ 휴학증명서
- ㉧ 기타 확인증명서

다만, 위 ㉣호의 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8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최종 학기에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성적증명서는 학년별 또는 학기별 등 부분별로 분리하여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증명서 발급제제) 학교재산(도서 및 체육기자재 등)의 이용에 있어서 소정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완결 때까지 제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제84조 (명칭변경) 제 증명서 발급시 본 대학교, 대학, 학부, 학과,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구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발급한다.(개정2010.3.1)

제85조 (수수료) 전 제82조의 제 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서식의 신청서에 본 대학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94년 1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6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8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0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0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05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5)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제65조 ②항의 단서조항은 2012학년도 제2학기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7) 이 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8)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20)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1)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9. 24)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22)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별지 >

제 호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전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학위) 성명

인

제 호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학과
전공
계열
학부

제 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학위) 성명

인

계절학기 운영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규수업기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을 방학기간중에 이수하게 함으로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다.
- 제 2 조 (개설시기)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제 3 조 (개설교과목) 개설교과목은 본교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전체 교과목과 기타의 교과목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 제 4 조 (수강제한) 제7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다.
1.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생의 경우 13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졸업학점이 134학점인 학생의 경우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3.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생의 경우 14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제 5 조 (수강학점) 매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 제 6 조 (수강등록)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수강료) 수강료는 1학점(시간)당 정규등록금중 수업료에서 20학점을 넘는 액수로 한다.
- 제 7 조의 2 (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반환금의 계산에 있어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수업일수	반환금액
수업개시 전	수강료 전액
수업개시 1/4선까지	수강료의 5/6 해당액
수업개시 2/4선까지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업개시 3/4선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업개시 3/4선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 8 조 (예산집행) 수강학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계절학기 운용비용에 충당하며 수강등록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산서에 대한 총장의 결제를 받아 집행한다.
- 제 9 조 (학급편성) 수강등록이 끝나면 등록학생이 많은 교과목 순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학급을 편성하며, 필요한 때에는 분반할 수 있다.
- 제 10 조 (강사위촉) 총장은 이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강일 7일 전까지 강사를 위촉한다.

제12조 (강의부담) 계절학기의 강의는 학기말시험 종료직후에 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총 강의시간)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총 강의시간은 해당 교과목의 정규학기 주당 강의시수에 16을 곱한 시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험) 매 계절학기의 시험은 2회로 하며, 그 실시 시기는 계절학기 강의 중간일과 종료일에 각각 실시한다.

제15조 (성적평가 및 처리)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방법은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성적처리의 결과는 다음 정규학기의 개강전에 발표한다.

제16조 (성적인정)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절학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4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7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2년 제2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4년 제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2-1~2 교무행정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공학계열(공과대학) 전자공학, 디지털정보공학, 산업경영공학 학과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인증프로그램은 해당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1.3.1)

제 3 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① 공학계열의 각 학과 또는 전공은 인증프로그램과 비 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프로그램은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교육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관련규정을 따른다.

④ 인증프로그램의 명칭과 학위명은 다음과 같다.(개정2010.3.1, 2011.3.1)

학과(학부) 또는 전공	인증 프로그램		비인증 프로그램	
	명 칭	학위명	명 칭	학위명
컴 퓨 터 공 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정보통신 공 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자공학	전자공학 심 화	공학사(전자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onics Engineering	전자공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디 지 털 정보공학	디 지 털 정보공학 심 화	공학사(디지털정보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Digital Information Engineering	디 지 털 정보공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산업경영 공 학	산업경영 공 학 심 화	공학사(산업경영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산업경영 공 학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제4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요건) ① 인증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별로 지정하는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칙에서 규정하는 졸업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인증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인증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5조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 ①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를 둔다.

1. 공학교육인증제 시행규정 제·개정 발의
2. 프로그램별 운영내규 제·개정에 대한 심의
3. 프로그램 공통사항에 대한 심의
4. 기타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②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과 PD 교수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된다.

③ (삭제)

제6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이수신청과 변경) ①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공학계열 학생은 2학년 진급 전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2010.3.1)

② 인증프로그램에 수용된 학생이 비인증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3학년 진급 전 공학교육인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2010.3.1)

③ 기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신청과 변경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전입생의 이수신청과 변경) ① 전입생(2005년 이전 입학 복학생 및 2008년 이후 편입생, 전과생)이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학년 진급 전까지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비 인증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진급 전 공학교육인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2010.3.1)

③ 기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신청과 변경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인증프로그램별 세부사항) 인증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재학생의 경우 2006년 입학생부터,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2008년부터 적용한다.
- (2) (삭제)
- (3)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9.2.26)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학과의 경우 2007년 이후 2010년 이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직과정의 이수)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의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격 및 요건

제 3 조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과 같다.(개정2010.3.1, 2015.6.29)

제 4 조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 2학년 1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 및 국내·외 교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 3학년 재학생은 다음 학년도 1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015.6.29)

- 1. 2학년 1학기까지 총 48학점 이상 이수
- 2. 2학년 1학기까지 교직과목 1과목 이상 이수

제 5 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학생수가 교육부에서 정한 승인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개정 2010.3.1, 2015.6.29)

- 1. 2학년 1학기까지의 성과 학과별 전형 성적으로 선발한다.
- 2. 선발 반영항목 및 비율
 - 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70%
 - 나. 학과별 전형 성적: 30%(단, 전형 항목은 각 학과에서 결정)
 - 다.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선발
- 3.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적격판정자에 한하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한다.

제3장 교직과정의 이수

제 6 조 (교직과목 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2(복수교원자격 취득)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제2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복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수교원자격 취득신청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표시과목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 선발되어야 한다.(개정 2010.3.1)

제8조 (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신청자격) 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신청자격은 2학년 2학기(4학기 등록)에 재학 중인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한다.

제9조 (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선발) 복수교원자격취득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미 신청한 제2전공, 부전공, 이중전공으로 같음하며 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소속대학 해당 표시과목별 승인인원에 준함.
2. 총 70학점을 기준으로 전체성적 상위자
3. 2호가 동일한 경우 신청전공 이수성적이 우수한 자(8학점 기준)

제9조의2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선발) 이중전공이 적용되는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한 복수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범대학 재학생으로 사범대학 내에서 이중전공을 선택하여 선발된 경우, 그 선발된 이중전공 학과를 복수교원자격취득예정 전공으로 인정한다.
2. 사범대학 재학생으로 비사범대 교직설치학과와 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비사범대학 교직 설치학과 학생들의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3. 비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복수교원자격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청한 이중전공으로 복수교원자격취득예정자를 선발한다.

제10조 (교육실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소정 기간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단, 소요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현장실습)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재학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등)을 이수하고 해당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무시험검정신청)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수인정)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자는 <별표 2>와 같이 성적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2015.6.29)

부 칙

- 41-2에 규정된 무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3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9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0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라도 복학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되, 신청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제4조(신청 및 승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7조(복수 교원자격 취득), 제8조(복수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신청자격), 제9조(복수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교직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9)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0) 이 규정은 2008년 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과(부) 및 전공별 선발인원(2007학년도까지 입학자)

대 학 명	학과(전공)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선발 인원	비고
영어대학	영어학과	영어	5	
	영문학과		5	
	영어통번역학과		3	
서양어대학	불어과	프랑스어	9	
	독일어과	독일어	9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25	
	노어과	러시아어	12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중국어	25	
	일본어과	일본어	9	
	아랍어과	아랍어	12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영학부	상업정보	5	계열모집 학부모집
			10	
인문대학	철학전공	철학	11	학부모집
서유럽학대학	영어학부	영어	9	
	불어과	프랑스어	6	
	독일어과	독일어	6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19	
동유럽학대학	노어과	러시아어	12	
아시아·아프리카대학	중국어과	중국어	12	
	일본어과	일본어	6	
	아랍어과	아랍어	9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상업정보	4	계열모집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수학	3	학부모집
	전자물리학전공	물리	3	
	생명화학전공	화학	4	
	환경학전공	환경	14	
정보산업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컴퓨터	15	학부모집

학과(부) 및 전공별 선발인원(2008학년도 입학자)

대 학 명	학과(전공)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선발 인원	비고
영어대학	영어학과	영어	5	
	영문학과		5	
	영어통번역과		3	
서양어대학	불어과	프랑스어	9	
	독일어과	독일어	9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9	
	노어과	러시아어	4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중국어	9	
	일본어과	일본어	9	
	아랍어과	아랍어	4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상업정보	5	
	경영학부		10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	10	
	독일어통번역학과	독일어	5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	6	
	중국어통번역학과	중국어	5	
	일본어통번역학과	일본어	4	
	아랍어통번역학과	아랍어	5	
동유럽학대학	노어과	러시아어	4	
어문대학	불어과	프랑스어	6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상업정보	4	
인문대학	철학전공	철학	4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수학	4	
	전자물리학전공	물리	4	
	생명화학전공	화학	5	
	환경학전공	환경	5	
정보산업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컴퓨터	6	

학과(부) 및 전공별 선발인원(2009학년도 입학자)

대학명	학과(전공)	교사자격 표시항목	선발 인원	비고
영어대학	영어학과	영어	5	
	영문학과		5	
	영어통번역과		3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프랑스어	9	
	독일어과	독일어	9	
	스페인어과	스페인어	9	
	노어과	러시아어	4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아랍어	4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중국어	9	
일본어대학	일본학부	일본어	9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상업정보	5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상업정보	10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	10	
	독일어통번역학과	독일어	5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	6	
	중국어통번역학과	중국어	5	
	일본어통번역학과	일본어	4	
아랍어통번역학과	아랍어	5		
동유럽학대학	노어과	러시아어	4	
어문대학	프랑스어과	프랑스어	6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상업정보	4	
인문대학	철학전공(과)	철학	4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과)	수학	4	
	전자물리학전공(과)	물리	4	
	생명화학전공(화학과)	화학	5	
	환경학전공(과)	환경	5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과)	정보·컴퓨터	6	

4-2 국내대학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 38조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본교와 국내 타 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이라 함은 수학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수학대학”이라 함은 수학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이하 수학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 4 조 (지원자격)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본교 재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2. 대학원은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제 5 조 (학점교류 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을 경유하여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 한다.

1. 학점교류신청원
2. 수학계획서
3. 재학 및 성적증명서

② 교류학생은 교무처에서 선발하며, 선발인원, 시기 및 절차는 교무처에서 정한다.

③ 정규학기 수학은 수강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강은 계절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학점교류 허가) 타 대학 수학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 7 조 (등록)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양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4-~~장~~ 9-32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 (학점교류신청의 취소) ① 학점교류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학점교류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계절학기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계절학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학점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17학점,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수학기동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35학점,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으로 한다.

제13조 (수학기간) ①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2개학기, 석사과정 3개학기, 박사과정 4개학기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4개학기 이내로 한다.

② 동일학기에 여러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수학학기 수는 1개학기로 본다.

제14조 (학점인정의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2. 교과목의 교과구분, 이수단위,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심의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학점인정 절차) 이수한 학점은 수학대학의 학업성적 결과 통보에 의하여 처리하되, 소정의 심의를 거친 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3 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6조 (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의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 (학점교류 신청) 소속대학 총장은 학점교류 지원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개시(계절학기 포함)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계절학기 포함) 2주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정원) 정규학기 수학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의 정원은 계절학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4-~~제20조~~ (등록료 및 수강료 등)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22조 (학점교류 신청의 취소) 학점교류 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학점교류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 (학점교류 허가의 취소) 학점교류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4조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17학점,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 ② 수학기간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사과정 35학점,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이내로 한다.
- 제25조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2개학기, 석사과정 3개학기, 박사과정 4개학기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4개학기 이내로 한다.
- 제26조 (취득학점의 처리)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 제27조 (수강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8조 (시설물 등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8. 21부터 시행하되, 199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 (3) 이 규정은 1999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복수전공 시행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 및 제45조에 의거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① 7학기까지(조기졸업 6학기) 제1전공에서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2011.2.21)
 ② 제1전공(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포함) 및 부전공을 8학기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의 부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자에 한한다.
- 제3조 (범위) ① 부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한해서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은 매학년도 해당학과(부) 입학정원의 150% 이내로 허용하되, 학기별로 수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2012.3.1)
- 제4조 (신청 및 허가)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8학기(조기졸업 제7학기) 수업일수 2/4선 이전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 추천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서식 1)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0.3.1)
- 제5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복수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1전공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6년 이내로 한다.
- 제6조 (이수시기 및 학점)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을 이수 후 수학기간의 단절없이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해당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 학점과 동일하다.
- 제7조 (학점인정) ① 복수전공 등록시 제1전공과정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21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초과 이수한 학점은 삭제한다.
 ② 복수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과정에서 해당 전공학점을 반드시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제8조 (재수강) 복수전공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다.
- 제9조 (등록 및 수강신청)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전공 이수후 소정 기간내에 복수전공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해야 한다.
- 제10조 (취소) ① 복수전공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0.3.1)

4-2-1~2②교류행정|상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과정을 취소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1전공(부전공 인정) 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 (졸업) ①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는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는 최종 졸업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여부는 졸업사정 회의에서 결정하며, 졸업사정 회의에서 통과된 자에 한해서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12조 (병사) 제1전공을 이수한 후 복수전공을 수학하는 기간에는 병역법상의 혜택(징집연기 등)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학칙준용)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7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①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7)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직제규정개정(2007.7.12)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1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1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은 2012학년도 제2학기 신입자부터 적용한다.
- (12)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까지만 적용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결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재			전/결	

복 수 전 공 이 수 신 청 서

_____ 대 학 _____ 학 과

학 번: _____ 성 명 : _____

복수전공 이수 희망학과 : _____ 학 과

전 화 번 호 : _____

상기 본인은 7학기까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 3.00 이상이 되며 복수전공 희망학과 부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 하였으므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 청 인: _____ (인)

한국의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아래란은 학생이 기재하지 말 것

구분 \ 학년 .학기	1 - 1	1 - 2	2 - 1	2 - 2	3 - 1	3 - 2	4 - 1	4 - 2
성적 평점 평균								
취득(신청) 학점								
부전공 이수학과				부전공 총 이수학점				
총 성적 평점평균			총 취득학점 계				판 정	

융합전공 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전공) 제2항에 따른 융합전공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3.1, 2016.3.18)
- 제 2 조 (정의)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연구소(센터)가 융합하여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2010.3.1, 2016.3.18)
- 제 3 조 (개설방법) ① 동일캠퍼스 내의 모든 학과(부) 또는 연구소(센터)는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2007.3.1, 2010.3.1, 2016.3.18)
- ② 개설을 위하여 융합전공 운영에 참여할 교수들로 융합전공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관학과를 정한다.(신설 2016.3.18)
- ③ 융합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연구소(센터)는 최소 개설 1개 학기 이전에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7.3.1, 2010.3.1, 2016.3.18)
- 제 4 조 (융합전공협의회) ① 융합전공의 교과개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융합전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6.3.18)
- ② 협의회는 전공운영에 참여하는 학과(부)장, 전공교수 또는 연구소장(센터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학과의 학과(부)장이 된다.(신설2016.3.18)
- ③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신설2016.3.18)
1. 융합전공 개설 신청
 2. 주관대학 선정
 3. 교육목표 설정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5. 융합전공 신청자격
 6. 융합전공 신청자 선발
 7. 그 밖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④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2016.3.18)
- 제 5 조 (융합전공운영위원회) ① 융합전공을 시행하기 위하여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6.3.18)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교육선진화센터장, 융합전공 주임교수(또는 관련전공학과 교수), 서울·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팀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개설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2007.3.1, 2008.3.1, 2015.5.19, 2015.6.29, 2016.3.18)

4-2-1~23) **교과편성**은 융합전공의 개설 및 폐지를 포함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7.3.1, 2016.3.18)

제 6 조 (허용범위) ① 융합전공은 단일전공으로 인정한다.(개정2007.3.1, 2016.3.18)

② 융합전공은 소속 캠퍼스 내에서만 이수할 수 있다. 단,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융합전공은 캠퍼스 간 이수를 허용한다.(개정2007.3.1, 2014.3.1, 2016.3.18)

③ 모든 융합전공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단, 기존에 부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융합전공은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2.5.3, 2016.3.18)

제 7 조 (신청 및 이수) 융합전공은 제2학년부턴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수신청은 학교의 이중전공, 부전공 신청 일정에 따르며, 이중전공시행규정을 준용한다. 단, 융합전공 특성에 따라 신청 및 시작 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6.3.18)

제 8 조 (교과개설) ① 교과목 편성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신설 2016.3.18)

② 교과목 편성 시 관련 학과(부)의 기존 개설 교과목을 활용하여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는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신설2016.3.18)

제 9 조 (학점이수) 융합전공의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8)

1.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이중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하다.(개정2007.3.1, 2015.6.29, 2016.3.18)
2. 융합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학부)에서 정한 융합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0.3.1, 2016.3.18)
3.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취득한 융합전공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2016.3.18)

제10조 (학위수여) ①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제1전공·융합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6.3.18)

② (삭 제) (2007.3.1)

③ 융합전공 학위 수여에 필요한 졸업논문이나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은 관련 학과(학부)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그 절차는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시행규정”에 따른다.(개정2010.3.1, 2016.3.18)

제11조 (융합전공의 폐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합전공은 폐지의 대상이 되며, 위원회에서는 해당 융합전공을 심의한 후 폐지한다.(신설2016.3.18)

4-2-1~21. 교무행정연속하여 신청학생이 10명 이하인 경우

2. 전공운영 중 연속 3년간 연평균 이수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이 30명 이하인 경우

3. 그밖에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폐지 대상 융합전공 주임교수로부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폐지유보의 결정은 2회에 한함)(신설2016.3.18)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2006학년도 현재 연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2015. 5. 19)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학생자유선택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4-2-1~2 교무행정 **외국어인증제 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전공) 및 제44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8항의 졸업인증에 따른 외국어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외국어인증제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외국어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 3 조 (적용원칙) 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별표1 “외국어인증 요건별 인증기준”의 내용에 따라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3.1, 2009.5.9, 2009.9.25, 2011.5.19, 2012.3.1, 2015.2.13)
②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생, 군 위탁생 및 새터민 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2012.3.1)
③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이중전공제를 선택한 학생(편입학생 포함)은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 4 조 (인증요건) ① <삭제> (2015.2.13)
② <삭제> (2015.2.13)
③ <삭제> (2015.2.13)
- 제 5 조 (인증의 유효) 외국어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제출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3)
- 제 6 조 (업무분장) ① 외국어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3.1)
② 학사종합지원센터는 학생이 제출한 성적표를 근거로 외국어인증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사본을 교무처처무시행세척 제7조(공문서등처리) 제3항에 의거 “병류”로 보관한다.(개정2008.3.1, 2015.2.13)
③ <삭제> (2008.3.1)
- 제 7 조 (지원방안) <삭제> (2015.2.13)
- 제 8 조 (대체방안) 외국어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4조와 병행하여 본 대학교 부속 교육기관 등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외국어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8.3.1)
- 제 9 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2) 아 위 정 목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9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에서부터 적용한다.
- (6)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외국어인증 요건별 인증 기준

유형	소속학과(전공) /입학전형구분	인증언어	인증기준 (각 유형 중 택1)																																	
1	영어관련전공	기타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영어제외) : FLEX로 인증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해당언어 학과의 결정에 따름 •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 해당 언어 전공의 기초어학강좌 96시간 이상 이수 (부전공/이중전공언어 제외) 																																	
2	비영어관련전공	영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인증점수(영어)</th> </tr> <tr> <th>FLEX</th> <th>TOEIC</th> <th>TOEIC 스피킹</th> <th>OPIc</th> <th>FLEX 스피킹</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 서울캠퍼스(영어대학 각 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제외)</td> <td>621점 이상</td> <td>710점 이상</td> <td>120점 이상</td> <td>IMI 이상</td> <td>170점 이상</td> </tr> <tr> <td>②</td> <td>• 글로벌캠퍼스(통번역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제외)</td> <td>611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120점 이상</td> <td>IMI 이상</td> <td>170점 이상</td> </tr> <tr> <td>③</td> <td>• 글로벌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td> <td>551점 이상</td> <td>645점 이상</td> <td>110점 이상</td> <td>IMI 이상</td> <td>160점 이상</td> </tr> </tbody> </table>	항목	구 분	인증점수(영어)					FLEX	TOEIC	TOEIC 스피킹	OPIc	FLEX 스피킹	①	• 서울캠퍼스(영어대학 각 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제외)	621점 이상	710점 이상	120점 이상	IMI 이상	170점 이상	②	• 글로벌캠퍼스(통번역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제외)	611점 이상	700점 이상	120점 이상	IMI 이상	170점 이상	③	• 글로벌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551점 이상	645점 이상	110점 이상	IMI 이상	160점 이상
항목	구 분	인증점수(영어)																																		
		FLEX	TOEIC	TOEIC 스피킹	OPIc	FLEX 스피킹																														
①	• 서울캠퍼스(영어대학 각 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제외)	621점 이상	710점 이상	120점 이상	IMI 이상	170점 이상																														
②	• 글로벌캠퍼스(통번역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제외)	611점 이상	700점 이상	120점 이상	IMI 이상	170점 이상																														
③	• 글로벌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551점 이상	645점 이상	110점 이상	IMI 이상	160점 이상																														
3	외국인전형 입학생	한국어, 영어, 기타언어 중 택 1	• TOPIK 또는 유형 1, 2의 인증 중 택 1																																	

* 영어관련전공 : 영어대학의 모든 학과,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의 모든 전공,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중전공 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전공)에 따른 이중전공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중전공이란 입학 당시의 전공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이수요건) ① 편입생 및 군위탁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재학 중 제1전공 이외에 반드시 이중전공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중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은 수강신청지침에 작성된 졸업학점배분표에 의한다.
- 제 4 조 (이수방법) ① 이중전공 및 전공심화과정은 2학년부턴 시작한다.
 ② 법과대학 학생은 부전공 또는 자유선택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과대학 학생 중 공학인증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또는 자유선택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법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과 학부의 학생이 전공심화과정을 할 경우 부전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10.3.1, 2014.3.1)
 ⑤ <삭제> (2015.6.29)
- 제 5 조 (이수의 제한) ① 비 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의 전공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Language & Diplomacy전공 및 Language & Trade전공을 이중전공(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신설2014.3.1, 개정2015.6.29)
 ③ 아래 표와 같이 캠퍼스 간 이중전공 제한학과로 설정된 학과들은 캠퍼스 간 이중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제한한다.(신설2014.3.1, 개정2015.6.29)

캠퍼스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학과(부)	영어대학 각 학과(전공),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인도어과, 중국어대학 각 전공, 일본어대학 각 전공	영어통번역학부, 프랑스학과, 독일어통번역학과, 러시아학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브라질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인도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 ④ 학과 간 커리큘럼의 유사성으로 이중전공(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기본학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 간 이중전공(부전공) 이수를 제한할

4-2-1~2수 교과목 개설(2015.10.27)

제 6 조 (인원배정) 이증전공 신청에 의한 인원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이증전공 배정 시기는 2학년 진급 시로 한다.
2. 배정 기준은 제1학년 성적으로 하며(배정 학기에 시행하는 계절학기성적 미포함),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부)별 자율적 기준으로 선발한다. 단,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격요건 미충족 시(서류미제출, 시험 미응시 등)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14.3.1, 2015.6.29)
3. 배정비율은 학과 입학정원의 150%로 한다. 단, 사범대학 내의 소속 학과 간 배정비율은 100%로 한다.

제 7 조 (후기이증전공) 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가 전공심화과정 완료 후 이증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후기이증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공심화과정이 필수가 아닌 편입생 및 2006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1)

② 신청 자격은 제7학기 또는 제8학기 이수중인 자로, 희망 이증전공과 동일한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한한다. 단, 8학기까지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후기이증전공을 최종 허가한다.(신설 2014.3.1)

③ 조기졸업대상자 및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4.3.1)

④ 선발 인원은 학과(부) 입학 정원의 50~150% 이내에서 학과(부)의 수용력에 따라 자율로 결정한다. 단,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격 요건 미충족 시(서류미제출, 시험 미응시 등)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2014.3.1, 개정 2015.6.29)

⑤ 후기이증전공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당해학기 3/4선 이후부터 다음 학기 1/4선까지 원격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소신청을 해야 하며, 졸업사정회의를 전후로 당해학기 또는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4.3.1)

제 8 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허용범위)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편입학생 포함) 본인이 원할 경우 이증전공제를 이수할 수 있으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3) (의무사항)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편입학생 포함) 이증전공제를 이수하는 경우,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하며 또한 중도에 이증전공제를 포기할 수 없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7학년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2) ~~다~~ ~~외~~ ~~장~~ ~~의~~ ~~행~~ ~~세~~ ~~규~~ ~~정~~ ~~개~~ ~~정~~ (2009.2.26)에 따라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재입학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의 허가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재입학이라 함은 학칙에 의해 제적된 자가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제적 전의 학적을 회복하여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

제 3 조 (자격) 재입학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다만,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이 0.00인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2008.3.1, 2016.5.6)
2. 학업성적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 (개정 2016.5.6)
3. 복수전공 과정을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한 자는 복수전공 과정으로의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소 전공인정학점제(1996학년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4.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 4 조 (재입학 여석)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한다.(신설 2016.5.6)

제 5 조 (신청시기) 재입학 신청시기는 매학기 방학 시작일로부터 5일간으로 한다.

제 6 조 (절차와 허가)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재입학각서, 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② (삭 제)

③ 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5.6)

④ (삭제 2016.5.6)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에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등의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 7 조 (재입학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5.6)

1. 재입학 신청자의 입학으로 학과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유

4-2-1~2 **사학폐지** 있는 경우 관련 학과(부)장 및 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학점취득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8 조 (학적회복) 재입학에 따른 학적 회복시에는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 경고, 재학연한 등은 계속 유효하다. 단,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전 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심사에 의해 허가된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6.5.6)

제 9 조 (학사제적자 제한조치) 학업성적 불량, 재학연한 초과,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자는 학칙 제26조(제적) 제①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다시 제적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학칙 제6조 제①항에 정한 재학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0)

1.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12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최종학기는 예외)
2.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후 그 다음 학기까지 졸업시험이나 논문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적 이전에 소정의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가 재입학한 다음 학기까지 졸업시험이나 논문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자가 전 1호 및 2호의 경우 이외에도 학사경고를 단 1회라도 받은 경우

제10조 (제한조치의 효력) 제9조의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제적 또는 자퇴한 후 다시 재입학 하더라도 제9조의 제한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제11조 (재입학 횟수) 재입학 허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제2호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제2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제1호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신설 2012.10.17)

1. 미등록 제적·휴학기간 초과 제적 : 2회
2. 자퇴·학업성적불량 제적·징계 제적·재학연한 초과 제적 : 1회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5.6)

부 칙

- (1)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3조 제2항 해당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7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6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과시행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서 정한 전과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전과는 학생이 재학중에 소속 학과(전공, 이하 생략한다)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 3 조 (범위 및 인원) ① 전과는 제2학년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진출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전입 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허용하되, 학과별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 지원자 모두를 허용한다. 단, 전입인원 산정 시 입학정원의 5%가 1명미만 일 경우 전입인원은 1명으로 한다.(개정2008.3.1, 2011.5.25, 2012.5.3, 2014.3.1, 2015.6.29)
- ② (삭제)(2014.3.1)
- 제 4 조 (신청 자격) 제1학년 과정 3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자로 하되, 배정 학기에 시행하는 계절학기성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5.25, 2014.3.1)
- 제 5 조 (제한) ①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3개학기 이상 재학한 자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전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전과 신청기간에 먼저 복학절차를 마친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
- ④ Language & Diplomacy전공 및 Language & Trade전공으로 전과할 수 없다.(개정2010.3.1, 2014.3.1, 2015.6.29)
- 제 6 조 (시기) ① 전과는 매학년도 1월중에 시행한다.
- ② 전과 시행에 관한 세부일정은 시행 전학년도 12월중에 공고한다.
- 제 7 조 (선발기준) ① 진출학생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하되, 동점자 발생 시 진출학과의 별도 심사에 의해 진출 학생을 선발한다.(개정2008.3.1, 2015.6.29)
- ② 학과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생의 선발기준을 정하되 학업성적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그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2008.3.1, 2015.6.29)
- 제 8 조 (신청 및 선발절차) 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전형료를 납부한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개정2008.3.1, 2015.6.29)
- ② 학과장은 학과의 선발기준에 의해 전입예정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 및 사정 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08.3.1, 2015.6.29)

~~제9조~~ 제2항(학과위원장) 처장은 각 학과장으로부터 전과예정자 명단 및 사정자료를 제출받아 총장의 결재로 전과를 허가한다. 다만, 전과예정자중 전과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9)

제10조 (등록) 전과로 인하여 등록금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점인정) ①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이수한 전적학과의 교양 및 전공과목 성적은 전입학과의 교양 및 자유선택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 전과한 자는 전적학과의 전공을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4.3.1)

부 칙

- (1) 이 규정은 199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1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 전공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 및 제45조에 의거 제2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① 4학년 진급예정자로 제3학년 2학기까지 제2전공 1개 영역에서 18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② 편입학을 했거나 전과한 자는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③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제 3 조 (범위) ① 제2전공은 해당캠퍼스에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해서 이수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2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을 할 수 없다.

제 4 조 (신청 및 허가) ① 제2전공 이수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3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에 제2전공 신청서(서식1)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교무처장은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제2전공 신청자 명단 및 사정자료를 제출 받아 총장의 결재로 제2전공 이수를 허가한다.

제 5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전공 이수자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 6 조 (학점) 제2전공 이수자는 졸업학점배분표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중도포기) 제2전공을 중도에 포기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이수한 학점이 21학점 이상이면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하고, 21학점 미만이면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8 조 (졸업) ① 제2전공 이수자는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제2전공의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는 최종졸업 학기초 소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는 제1전공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④ 졸업이 결정된 자에게는 학위증에 제1전공과 제2전공 학위를 함께 표기하여 수여한다.

제 9 조 (학칙준용)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99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제로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제2전공을 할 수 있다.
- (4)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까지만 적용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조기졸업제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 제5조 제2항 및 학칙 제40조에 의한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정의) 조기졸업이라 함은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이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의 교과목을 더 이수하여 8학기 미만의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자격 및 허가) ① 조기졸업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학년 제2학기까지 졸업학점배분표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신청서(서식)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결격 및 조치사항) ① 조기졸업대상자로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1.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미만인 자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
- ② 조기졸업대상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8개 학기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제8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3.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조 기 졸 업 신 청 서

1. 학생 인적사항

대 학		학 과		학 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2. 성적사항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취 득	총 성적	학 과 장 의 건
	1-1	1-2	2-1	2-2	학점계	평점평균	
성적평점평균					X		
취 득 학 점						X	

위와 같이 조기졸업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의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조기졸업 신청자격

1. 제2학년 제2학기까지 대학별(학년별)로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 조기졸업대상자로 허가받은 자는 매학기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 추가로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로 허가 받은 자의 자격 취소요건

1.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
2.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미만인 자

4-2-1~2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졸업에 필수로 부과된(학칙 제44조 및 제45조)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그 관리체제를 조직화하고 그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는데 있다.
- 제 2 조 (적용범위)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이하 ‘졸업시험’이라 칭한다),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기타 평가방법으로 졸업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 제 3 조 (자격) 3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4 조 (적용)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은 전공, 이중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에 부과한다.(개정2008.3.1, 2016.3.18)
- 제 5 조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또는 졸업시험 응시원서 제출)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3학년 제2학기초 또는 졸업학기의 직전 학기초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양식 1)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의 직전 학기초 또는 졸업학기초에 졸업시험 응시원서(양식 2)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배정) ① 졸업논문의 지도교수는 학과장이 배정한다.
② 학과장은 제1항에 의한 졸업논문지도교수 배정표(양식 3)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에 한하며, 학생의 수는 10명 이내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도교수는 졸업논문의 작성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하며,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학생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졸업논문 제출) ① 졸업논문은 매년 5월 중순 또는 11월 중순에 지도교수의 승인서(양식 4)를 받아 졸업논문에 첨부하고, 이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졸업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 8 조 (졸업논문 심사 및 과정) ①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심사과 관정을 위하여 해당학과 교수 중에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학과장이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의 작성자는 5월 중순 또는 11월 중순에 졸업논문의 요지를 구두 발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위원은 구두시험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의 심사는 A⁺, A⁰, B⁺, B⁰, C⁺, C⁰, D⁺, D⁰, F로 평가하고 D⁰급 이상을 급제,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서식 5), 2명의 심사위원이 “급제”와 “낙

4-2-1~2제 교무처장 상이한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판정하게 한다.

④ “F”로 판정된 졸업논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⑤ 졸업논문 판정은 6월중순 또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판정결과 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졸업논문 심사후의 처리) ① 통과된 졸업논문은 그 제목과 성적을 학적부에 명기한다.

② 졸업학기까지 졸업논문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격을 상실하며, 재학연한 내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졸업시험 실시) ① 졸업시험은 5월말과 11월말에 실시한다.

②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어문계열의 경우 FLEX시험(외국어인증제)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8.3.1)

③ 학과장은 졸업시험 출제과목과 출제위원 명단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졸업시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 제44조 제5항에 의거 단과대학 별로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 (졸업시험 실시 절차) ① 각 단과대학별로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시험실시 일자 및 각 학과별 시험과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에서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시험장소 배정 및 시간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12조 (졸업시험성적 평가) ① 졸업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만 합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과목별 최저점수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 성적보고서는 6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졸업시험 실시후 처리) ① 합격된 졸업시험은 그 성적을 학적부에 명기한다.

② 졸업학기까지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격을 상실하며, 재학연한 내에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험관리위원회는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해당 대학의 학장과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5조 (시험관리위원회 기능) ① 졸업시험실시 및 감독교수 배정

② 졸업시험실시 변경에 관한 발의

제16조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통과자의 자격 인정)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는 졸업시까지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단, 학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20조 개정(2008.3.1)

제18조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은 1981학년도 입학자로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4년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01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졸업 시험 응시원서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연락처			
졸업예정년도	년	월			

위와 같이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_____ 학과장 귀하

논문제출 청구 및 승인서

제 목 : _____

대 학 : _____ 학 과 : _____

학 번 : _____ 성 명 : _____

이 논문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위 학생의 논문제출을 승인함.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졸업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대 학 : _____ 학 과 : _____

학 번 : _____ 성 명 : _____

논문제목 : _____

심사결과

심 사 위 원	관 정	불합격 사유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교무처장 경유

총장 귀하

졸업 사정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 자격을 심의하는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개정2008.3.1)

제 2 조 (졸업사정회) ①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졸업사정회를 운영한다.(신설2008.3.1)
② 졸업사정회는 년2회 개최한다.

제 3 조 (사정대상자) 졸업사정의 사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3.1)

1. 8회 이상 등록한 자, 단, 조기졸업자의 등록회수는 조기졸업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 학칙 제41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수강 해당학년 학기 교과과정에 의거 각 부분별(전공,부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교직)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개정2008.3.1)
3.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제 4 조 (학점계산) 전 제3조 제2호의 각 부분별 학점계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교과목을 이증으로 이수한 학점
2. 1년간 수강 교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한 학점, 단, 폐강한 과목, 최종학기 신설 과목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개정 2008.3.1)
3. 부전공 또는 제2전공 교과목 중 자기가 선택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배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단, 부전공, 제2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는 변경전 또는 포기전의 부전공, 제2전공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조 (사정결격자) 제3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졸업사정 대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삭제)
2.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학칙 제41조)
3.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요건에 미달된 자(학칙 제41조)
5. 최종 학기 학사경고 받은 자로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00이상인 자는 제외

제 6 조 (특수외결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사항은 졸업 사정회에 부의하여 사정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이 규정은 197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졸업사정에 관한 규정은 폐기한다.
- (3) 이 규정의 제3조, 제4조는 197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①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1학년도 이전 법과대학에 편입학, 군위탁, 복수전공을 한 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7)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04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졸업인증제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에 따른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졸업인증제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함에 추가하여 별도 요건인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생, 군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인증요건) ① (삭제 2015.2.13)

② 졸업요건별 인증기준표는 다음과 같다.(개정2009.5.9, 2010.3.1, 2015.2.13)

구 분	대 상	인증기준		비 고
영어인증	영어관련 전공	FLEX	• 701점 이상(듣기/읽기영역)	각 유형 중 택1
		TOEIC	• 750점 이상	
		TOEFL	• 550점(PBT) 이상 • 215점(CBT) 이상 • 82점(IBT) 이상	
		IELTS	• 6.0 이상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FLEX	• 551점 이상(듣기/읽기영역)	각 유형 중 택1
		TOEIC	• 650점 이상	
		TOEFL	• 523점(PBT) 이상 • 193점(CBT) 이상 • 64점(IBT) 이상	
		IELTS	• 5.5 이상	
		TOEIC 스피킹	• 110점 이상	
		OPIc	• IM1 이상	
		FLEX 스피킹	• 160점 이상	
	기타 학과	FLEX	• 601점 이상(듣기/읽기영역)	각 유형 중 택1
		TOEIC	• 700점 이상	
		TOEFL	• 530점(PBT) 이상 • 200점(CBT) 이상 • 64점(IBT) 이상	
		IELTS	• 5.5 이상	
		TOEIC 스피킹	• 120점 이상	
		OPIc	• IM1 이상	
		FLEX 스피킹	• 170점 이상	

제 5 조 (인증의 유효) 졸업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제출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한다.(개정2015.2.13)

~~제 8 조 ~ 2~~ ~~업~~ ~~규~~ ~~정~~ ① 졸업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학사종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2007.10.15, 2015.2.13)

② 학사종합지원센터는 학생이 제출한 성적표를 근거로 졸업인증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사본을 교무처처무시행세척 제7조(공문서등처리) 제3항에 의거 “병류”로 보관한다.(변경2007.10.15, 2015.2.13)

제 7 조 (지원방안) (삭제2015.2.13)

제 8 조 (대체방안) 졸업인증의 요건 중 영어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4조 제2항과 병행하여 본 대학교 부속교육기관등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졸업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8.3.1)

제 9 조 (위입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대체방안)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9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4-2-1 학과별^정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생선발 시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개정2008.3.1, 2010.3.1, 2014.3.1)
- 제 2 조 (배정시기) 학과(전공) 배정 시기는 대학(계열/학부)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0.3.1, 2010.10.4, 2014.3.1)
- 제 3 조 (배정기준) ① 전공(학과) 배정 기준은 대학(계열/학부)의 결정에 따르며, 그 기준을 사전 공지한다.(개정2010.3.1, 2014.3.1)
② 전공예약제 입학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학당시 예약된 전공으로 배정하며, 이외의 전공으로 배정할 수 없다.(신설2014.3.1)
- 제 4 조 (배정인원) ① 학부로 모집하는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의 전공별 인원배정은 학부결정에 따른다.(개정2008.3.1)
② <삭 제>(2010.3.1)
③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 배정은 배정기준인원의 120% 이내로 하되, 세부 배정인원은 각 대학(계열/학부)의 결정에 따른다.(개정2010.3.1, 2014.3.1, 2014.6.20)
④ <삭 제>(2010.3.1)
⑤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 배정기준인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8.3.1, 2008.3.1, 2010.3.1, 2014.3.1, 2015.6.29, 2016.5.6)

부 칙

- (1)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계열(학부)로 모집하는 대학의 학과(전공)배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3) 이 규정은 2005년 6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별표 1'과 '별표 2'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5)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9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른다.
- (10) 이 규정은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16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과를 구분하지 않는 모집단위의 학과(전공) 배정기준인원

대 학	학 부	학 과(전공)	입 학 정 원	배 정 기준인원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70	30
		FATI전공		20
		프랑스·EU전공		20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56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전공	52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48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35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PR·브랜드전공 방송·영상·뉴미디어전공	60	
상경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82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35	
Language & Trade학부		Language & Trade전공	21	
인문대학	인문과학계열	철학과	102	34
		사학과		34
		언어인지과학과		34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16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100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영어학전공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50	
		서아프리카어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30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Global Business & Technology전공	70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105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35	

학위 수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 및 대학원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의 종류)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학위

제 3 조 (학위의 중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인 자에게는 다음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09.5.9, 2010.3.1, 2010.10.4, 2014.3.1, 2014.6.20, 2015.6.29)

대학(학부)	전 공	학위명
영어대학	영어학과	문학사
	영미문학·문화학과	문학사
	EICC학과	문학사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문학사
	독일어과	문학사
	노어과	문학사
	스페인어과	문학사
	이탈리아어과	문학사
	포르투갈어과	문학사
	네덜란드어과	문학사
	스칸디나비아어과	문학사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문학사
	아랍어과	문학사
	태국어과	문학사
	베트남어과	문학사
	인도어과	문학사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문학사
	이란어과	문학사
몽골어과	문학사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학사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학사/중국정치경제학사

4-2-1~2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문학사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지역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정치학사 행정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커뮤니케이션학사 커뮤니케이션학사 커뮤니케이션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사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국제학사
Language & Diplomacy 학부	Language & Diplomacy 전공	국제관계학사 사회과학학사
Language & Trade 학부	Language & Trade 전공	국제통상학사
인문대학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 영어학전공 독일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아랍어통번역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4-2-1~2 등 유럽대학	폴란드어과	문학사
	루마니아어과	문학사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문학사
	헝가리어과	문학사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문학사
	우크라이나어과	문학사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문학사
	브라질학과	문학사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문학사
	인도학과	문학사
	중앙아시아학과	문학사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서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남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러시아학과	문학사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국제스포츠레저학사
한국학과		
경상대학 (국제금융학부)	국제금융전공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학사
	통계학과	이학사
	전자물리학과	이학사
	환경학과	이학사
	생명공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공학사/공학사(전자공학심화)
	디지털정보공학과	공학사/공학사(디지털정보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공학사(산업경영공학심화)

제 4 조 (취득요건)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각종 시험 또는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학위증) 학사학위증은 별지 <서식 1-1, 1-2, 1-3>과 같다.

제 3 장 석사학위

제 6 조 (학위종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2010.10.4, 2013.3.28, 2014.6.20, 2014.7.31, 2014.9.12, 2015.10.23, 2016.1.19)

4-2-1~2학 교과제 행정	전 공	학 위
영어학과	영어학	언어학석사
영문학과	영문학	문학석사
영어번역학과	영어번역학	영어번역학석사
불어불문학과	불어학	언어학석사
	불문학	문학석사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언어학석사
	독문학	문학석사
노어노문학과	노어학	언어학석사
	노문학	문학석사
스페인어문학과	스페인어학	언어학석사
	스페인문학	문학석사
이어이문학과	이어학	언어학석사
	이문학	문학석사
포어포문학과	포어학	언어학석사
	포문학	문학석사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	스웨덴어학	언어학석사
	스웨덴문학	문학석사
TESOL학과	영어교육	문학석사
일어일문학과	일어학	언어학석사
	일문학	문학석사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언어학석사
	중문학	문학석사
동남·남아시아어문학과	힌디어학	언어학석사
	힌디문학	문학석사
	마·인어학	언어학석사
	마·인문학	문학석사
	태국어학	언어학석사
	태국문학	문학석사
	베트남어학	언어학석사
	베트남문학	문학석사
중동어문학과	아랍어학	언어학석사
	아랍문학	문학석사
	터어키어학	언어학석사
	터어키문학	문학석사
	이란어학	언어학석사
	이란문학	문학석사
아프리카어문학과	아프리카어학	언어학석사
	아프리카문학	문학석사
동유럽어문학과	폴란드어학	언어학석사
	폴란드문학	문학석사
	루마니아어학	언어학석사
	루마니아문학	문학석사

4-2-1~2 교무행정

	형가리어학	언어학석사
	형가리문학	문학석사
	유고어학	언어학석사
	유고문학	문학석사
	체코어학	언어학석사
	체코문학	문학석사
	불가리아어학	언어학석사
	불가리아문학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언어학석사
	국문학	문학석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석사
언어인지과학과	언어학	언어학석사
철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철학석사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문학석사
	서양사, 과학사	문학석사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문학석사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문화콘텐츠학석사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정치·경제, 인문·사회	문학석사
국제관계학과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정치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
법학과	공법, 사법	법학석사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	언론학석사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석사
	금융경제학	경제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석사
글로벌스포츠학과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글로벌스포츠학석사
	글로벌스포츠 사이언스	글로벌스포츠학석사
외국어로서한국어번역전공		번역학석사
수학과	수학	이학석사
	금융수학	이학석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석사
화학과	화학, 생물화학	이학석사
통계학과	통계학	이학석사
환경학과	환경학, 대기환경과학	이학석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석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석사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 전자시스템공학	공학석사

4-2-1~2산업경영공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기술경영공학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글로벌다형지식융합전공

제 7 조 (논문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은 등록 4회를 마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8 조 (논문제출기간) 석사학위 논문은 재학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때에는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9 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학 전공의 경우는 전공한 외국어로 작성함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로 하되 영어를 전공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응시하여야 하고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일하여 응시한다.

② 외국어 시험은 FLEX 읽기영역 300점 이상(600점 만점) 득점을 합격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및 전공외국어 시험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로 구분하여 출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FLEX는 점수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합격 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 문제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여 복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시험) ①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별 전공 특성상 종합시험 과목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2016.1.19)

④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2015.10.23)

⑤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4-2-1~2⑥ 교수합격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①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하여 그 심사를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

제13조 (학위기) 석사학위기는 별지서식(2, 2-1)과 같다.(개정2014.2.4)

제 4 장 박사학위

제14조 (학위종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 종별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2010.10.4, 2013.3.28, 2014.6.20, 2014.7.31, 2014.9.12, 2015.10.23, 2016.1.19)

<u>학 과</u>	<u>전 공</u>	<u>학 위</u>
영어학과	영어학	언어학박사
영문학과	영문학	문학박사
영어번역학과	영어번역학	영어번역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불어학 불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독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노어노문학과	노어학 노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스페인어문학과	스페인어학 스페인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TESOL 학 과	영어교육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일어학 일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중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중동어문학과	아랍어문 아랍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동유럽어문학과	폴란드어학 폴란드문학 루마니아어학 루마니아문학 헝가리어학 헝가리문학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언어학박사 문학박사

4-2-1~2 교무행정

	유고어학	언어학박사
	유고문학	문학박사
	체코어학	언어학박사
	체코문학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언어학박사
	국문학	문학박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박사
비교문학과	비교문학	문학박사
언어인지과학과	언어학	언어학박사
철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철학박사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과학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문학박사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문화콘텐츠학박사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정치·경제, 인문·사회	문학박사
국제관계학과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박사
법학과	공법, 사법	법학박사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	언론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번역학박사
수학과	수학	이학박사
	금융수학	이학박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박사
화학과	화학, 생물화	이학박사
통계학과	통계학	이학박사
환경학과	환경학, 대기환경과학	이학박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박사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 전자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공학박사
	기술경영공학	공학박사
글로벌다형식식용합전공		공학박사

제15조 (논문제출자격)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은 등록 4회를 마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

제16조 (논문제출기간) 박사학위 논문은 재학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때에는 과점수로 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학 전공의 경우는 전공외국어로 작성함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3.28)

학 과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어 문 계 열 학 과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번역학과, TESOL학과	진 공 영 어	FLEX(영어 이외 외국어) 단,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제2한문, 컴퓨터프로그래밍언어 중 택 1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제외) 비교문학과	FLEX(영어)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한 문	해당사항 없음
	기타 어문계열 학과	해당 전공외국어	
기 타 학 과		FLEX(영어)	해당사항 없음

1. 단, 어문계열 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2. 기타 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제1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FLEX 읽기영역 320점(600점 만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및 전공외국어 시험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로 구분하여 출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FLEX는 점수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합격 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 문제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여 복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9조 (종합시험) ①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별 전공 특성상 종합시험 과목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2016.1.19)

④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종합시험의 출제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4-2-1~2⑥교류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20조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①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5인 이상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하여 그 심사를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각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21조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해당학기의 졸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규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기에 논문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참고자료제출) 대학원위원회는 논문 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청구 자에게 논문의 번역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제출된 논문의 중심시 행하며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회 호선으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구술시험 합격점수)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5조 (학위수여) ① 대학원위원회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사 요지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의 시행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3, 3-1)에 학위기로 행한다.(개정2014.2.4)

제26조 (학위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대학교 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논문의 공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명예박사학위

제28조 (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9조 (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별지 서식(4)에 의한다.

제30조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14조 박사학위종별에 따른다.

제31조 (수여취소) 제26조 박사학위수여 취소 조항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자에게도 준용한다.

- (1)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① (시행일) 이 규정 제6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에 의한 컴퓨터공학과와 공학석사 학위 수여는 199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 1994학년도 후기 이전 입학생으로서 휴학 후 복학하여 신 교과 과정을 수료하면 공학석사를 수여한다.
 2) 1995학년도 후기 수료 후 논문제출 만기(4학기)에 제출한 학생은 공학석사를 수여한다.
- (6) ① (시행일) 이 규정 제3조는 1995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3조의 개정에 의한 컴퓨터공학과와 석사학위는 1996학년도 후기까지 이 학사를 수여하고, 1997학년도 전기(1998년 2월)부터 공학사를 수여한다.
- (7)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 (8)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대학원 학칙 제41조 및 학위수여규정 제8조, 제1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9)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3)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중 제 6조, 제 14조는 2000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14)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7)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4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8)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4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92① (외국어) 행정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1)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3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04학년도 까지 입학한 무역학과 학생의 학과명칭은 국제통상학과(구무역학과)로 하며, 학위는 경영학사로 한다.

(22)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3)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0학년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4) ① (시행일) 제11조 5항, 제19조 5항의 변경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4조의 명칭변경은 2007학년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5)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4조의 신설 전공은 2008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6)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의 신설 박사과정은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7)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8)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의 신설 학과, 전공 및 제14조의 신설 학과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10조(외국어시험) 및 제18조(외국어시험)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9)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2)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제3조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3)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의 경우 2007년 이후 2010년 이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TESOL학과의 전공 및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4)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 제18조는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5) 이 규정은 201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6)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72에 규정된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8)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0)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대학 전공(학사)

대학 전공(학사)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_____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학위) : 대학 전공(학사)

부 전 공 :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_____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진 공 : 대학 전공
학 위 : 학사(공학심화)
부 전 공 :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_____

석 제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한국외대○○○○(석)○○

M No. 000 Diploma No:HUFS0000(M)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 (signature) 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 (signature) 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박 제 ○ ○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한국외대○○○○(박)○○

D No. 000 Diploma No:HUFS0000(D)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signature)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위 분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인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한국외대○○○○(명박) 제 호

2-2-1~12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 학생들의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이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학점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의 인정은 본교에서 정한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 하며, 수학 전에 학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군 입대 휴학 중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도 포함한다.
3. 인정학점은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제3조 (인정횟수) ① 학점 인정의 횟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② 1회에 취득한 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인정횟수를 1회로 계산한다.

제4조 (등록금) 이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과 별도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2009.10.29)

제5조 (적용원칙) ①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 인정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② 이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은 장학금 산정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1~12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 29조의 2에 따른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본 연계과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사학위 취득 후 별도의 전형 없이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이수 하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 제 3 조 (모집대학원 및 인원) 모집대학원은 본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및 국제지역대학원에 한하며,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 중 약간 명으로 한다.
- 제 4 조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횟수를 기준으로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3학년 1학기(5학기)까지 총94학점(통번역대학 101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개정2010.3.1)
 2. 대학원 지망학과(전공)의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제 5 조 (지원학과 및 전공) 지원학과 및 전공은 학사과정의 제1전공 또는 이중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 제 6 조 (신청 시기) 본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등록횟수를 3학년1학기(5학기)를 마치고 3학년2학기(6학기) 등록예정자를 대상으로 매학년도 2월초와 8월초로 한다.
- 제 7 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지원학과 전공 주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 제 8 조 (전형방법 및 입학허가)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학업성적, 구술 및 면접시험 등으로 하며, 입학허가는 해당 대학원장이 행한다.
- 제 9 조 (성적유지)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6학기, 7학기 취득 평점평균을 각각 3.5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2010.3.1)
- 제10조 (수업연한) 본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3.5년(7개 학기), 석사과정 1.5년(3개 학기), 총 5년으로 한다.
- 제11조 (수강신청) ① 본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6학기과 7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대학원 지망학과 전공주임 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 교과목 중 총9학점까지 6학기, 7학기에 선택하여 할 수 있다.

- 제12조 ~ (통합전형) 위학사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 9학점에 대한 이수구분은 학사과정에서는 2006학번 이전 학생은 자유선택 학점(대학원 연계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2007학번 이후 학생은 전공(이중전공)으로 인정하며, 대학원 입학 후에는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4.3.1)
- 제13조 (학사과정 졸업요건) 본 연계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취득요건은 일반 학부과정과 동일하나, 대학원 연계 교과목 9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2009.5.7, 2014.3.1)
- 제14조 (대학원 입학 및 등록) ① 본 연계과정 이수자의 대학원 입학은 학사과정 졸업 후 수학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으로 하여야한다.
 ②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 입원치료(4주 이상)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 제15조 (중도포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취소하며,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2.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자
 3.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6, 7학기 각각 취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인 자(개정2010.3.1)
 5. 연계전공을 허가 받은 자가 6, 7학기에 대학원 교과목 9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제16조 (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9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